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94

발의연월일: 2020. 11. 27.

발 의 자:서영교·김민철·김영배

김영호 • 문진석 • 양정숙

오영환 · 이광재 · 임오경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유행하고,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PM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 중임. 하지만 PM 이용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PM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한 현실임.

2019년 PM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447건, 부상은 473명인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0월기준 사고건수 688건, 부상 760명인 상황에 달함.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제5호 중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0조제9항 중 "착용하여야"를 "착용하여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7항까지"를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항을"을 "제3항, 제4항을"로, "운전자"를 "운전자(자전거 운전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 14. 제50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자

제160조제2항제3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운전자"를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
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	행금지)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u>제외한다</u>)	<u>포함한다</u> -
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	
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	
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	
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등) ①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5
이동장치는 <u>제외한다</u> . 이하	<u>포함한다</u>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	
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	
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 13. (생 략)

② (생략)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① ~ ⑧ (생 략)
-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 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생 략)

<신 설>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 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 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6.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착용하여 주·야간이</u>
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
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
<u>록 하여야</u> .
① (현행과 같음)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
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
치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
아야 한다.
제156조(벌칙)
1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 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 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 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 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 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 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 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 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 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 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 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 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 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u>제10항까지</u>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 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2. ~ 5. (생 략)
- 6. 제50조제1항 및 <u>제3항을</u> 위 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 12.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160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 (생략)
-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2. ~ 5. (현행과 같음)
6제3항, 제4
항을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7. ~ 12. (현행과 같음)
1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
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
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u>14. 제50조제11항을 위반하여</u>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자
세1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u>о́</u>)
②
·.
1. • 2. (현행과 같음)

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 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u>운전자</u>

4. ~ 8. (생 략)

③・④ (생 략)

-----우저자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4. ~ 8.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